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5.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 22. 이민석 의원 외 5명
- 나. 회부일자 : 2020. 1. 29.
- 다. 상정일자 : 제235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0. 2. 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최은하 의원

가. 제안이유

마포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2) 적용 범위를 마포구 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한정함.(안 제3조)
- 3)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4)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5)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6)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9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준호)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마포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축제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서 상위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상 외 옥외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의 구청장의 책무, 필요시 긴급안전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전반을 다루고 있음.
- 특히, 안 제3조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제73조의11⁷⁾에 따라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의 안전관리조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적용범위‘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7) 제73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는 안건으로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정책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범위와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긴급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경찰서장, 병원 등에 대한 지원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3,000명 이상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법령의 위반 사항 없는 자치사무로서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 해당 업무 추진 시 야외행사별 법령 적용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상세한 내역(행사명, 장소, 기간, 참석인원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4조 및 제60조⁸⁾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 여부 등과 연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8) 제54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0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처음으로